

전남대학교 졸업(수료)사정 지침

I. 목 적

이 지침은 우리대학교 학칙 및 교학규정에 규정된 졸업(수료)사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졸업(수료)사정에 정확을 기하고 졸업대상자 선정에 착오가 없도록 하기 위함

II. 기본방침

학칙 제59조, 교학규정 제56조 내지 제62조의 규정 및 전남대학교 학·석사학위연계과정 및 학·석박사학위통합연계과정 운영지침에 의거 다음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소속 대학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수료)자로 확정함 <개정 2014. 8. 12.> <개정 2017. 4. 25.> <개정 2024. 7. 15.>

1. 졸업 대상자(공통)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가. 학칙 제56조의 졸업 및 수료학점과 “졸업소요학점구성표”에 의거 학점을 취득한 자
- 나. 전 학년 성적 평균평점이 1.75 이상인 자(계절학기 성적 포함)
- 다.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을 충족한 자 <개정 2017. 4. 25.>
- 라. 졸업자격인정기준에 합격한 자(99학번 이전 입학자는 졸업자격인정기준의 전공영역만 해당)

2. 수료 대상자

- 가. 8학기 이상 이수하고 ‘1’ 항의 졸업대상자 중 졸업자격인정기준 불합격자 <개정 2017. 4. 25.>

3. 졸업(수료)대상자는 졸업사정 당시 정규학기 학적 상태가 ‘재학’인 자에 한함

- 가. 당해학기 졸업(수료)을 목적으로 계절수업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그 계절수업이 속한 정규학기에 재학한 자에 한함 <신설 2013. 3. 6.>

III. 졸업(수료) 사정의 세부기준

졸업(수료) 사정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의 세부기준에 충족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졸업(수료) 대상자로 확정한다.

1. 교육과정 적용

- 가. 교과목 이수는 입학년도 교육과정을 따르되, 복학(재입학)자는 복학하는 학년도의 소속학년 학생이 입학했던 당시의 교육과정을 따를 수 있다.

나. 편입(일반·학사)학생은 편입학하는 학년도의 소속학년 학생이 입학했던 당시의 교육과정을 따르되, 수의대 수의학과, 의대 의학과는 본과 1학년 진입자의 교육과정을 따른다.

다. 모집단위 폐지 등으로 교육과정이 종료되었으나, 복학·재입학 등의 학적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종료 전 교육과정을 따를 수 있다.

2. 졸업 사정(계절학기 성적 포함)

가. 졸업 사정 대상자

1) 일반졸업 예정자

가) 8학기 이상 등록하고 졸업소요학점 취득가능자(다만, 건축·도시설계전공, 건축디자인학과는 10학기) <개정 2014. 8. 12.>

나) 기 수료자로서 졸업자격인정기준 심사 합격자

2) 조기졸업 예정자

가) 6학기 또는 7학기를 등록하고 당해 학기 및 계절학기 성적을 포함 졸업소요학점 취득이 가능한 자로서, 전 학년 성적 평균평점이 4.0이상(2014학년도 이전 입학자는 3.75이상이며, 2005학년도 이전 여수캠퍼스 입학자는 4.0이상)이고 조기졸업을 희망한 자([별표1] 조기졸업희망원 제출자) <개정 2014. 12. 26.>

나) 전남대학교 학·석사학위연계과정 및 학·석박사학위통합연계과정자로 선발되어 7학기를 이수(예정) 하고, 전 학년 성적 평균평점이 3.5이상이고 조기졸업을 희망한 자([별표2] 학·석사학위연계과정 및 학·석박사학위통합연계과정 학부졸업신청서 제출자) <신설 2014. 8. 12.> <개정 2024. 7. 15.>

3) 편입학 졸업 예정자

가) 4학기(의대, 수의대 8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편입학생 교육과정 이수지침에 의거 편입학과 졸업소요학점의 2분의 1이상 취득이 가능한 자

나) 편입학년도에 지정된 교육과정 이수기준표에 의한 학점의 취득과 학과에서 특별히 이수하도록 지정한 과목을 이수한 자

4) 학점인정 조기졸업 예정자

가) 우리대학 졸업자(퇴학·제적자 포함)가 입학하여 기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은 경우 인정학점에 따라 1년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 단축 가능([별표1] 조기졸업희망원 제출자)

나. 졸업소요학점 취득

학부(과, 전공)별 졸업소요학점 구성표에 의한 교양(필수, 선택), 전공(필수, 선택), 일반선택 학점의 체계적인 취득 여부

1) 교과목 이수

가) 필수교과목(교필, 전필, 부필, 복수전공필수 등) 취득 여부

- 필수교과목 미이수로 인한 졸업불가자의 경우에는 동일교과목이나 대체교과목을 이수하였는지 확인

나) 교육과정의 변경으로 폐지·변경된 과목은 동일교과목 또는 대체교과목을 이수하였는지 여부

- 1:2로 분리된 과목이 하나로 통합되어 동일교과목으로 지정된 과목은 1:2를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동일 교과목으로 지정된 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하며, 1:2중 한 과목의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다) 교육과정 개편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해당학과의 신설 전공교과목을 이수하였는지 여부

라) 동일교과목의 학점감소 등으로 필수학점이 부족한 경우에 부족학점을 선택 교과목에서 보충했는지 여부

마) 교양초과학점의 인정 범위

- 교양취득학점이 교양이수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교양최대인정학점 범위내에서 졸업소요학점으로 인정하며, 그 교양최대인정범위를 초과한 경우 졸업소요학점으로 인정하지 않음

바) 교양이수영역 충족여부

- ① 1993~1995학년도 입학자: 8개영역 중 6개영역 이상에서 각3학점이상 이수
- ② 1996~2006학년도 입학자: 8개영역 중 4개영역 이상에서 각3학점이상 이수
- ③ 2007학년도 이후 입학자: 핵심교양 4개영역 중 3개 영역 이상에서 각3학점 이상 이수
- ④ 2010학년도 이후 입학자: 핵심교양 4개영역에서 각3학점 이상 이수
- ⑤ 2014학년도 이후 입학자: 핵심교양 4개영역 중 3개 영역 이상에서 각3학점 이상 이수

<신설 2014. 8. 12.>

※ 인문사회계열의 경우 2005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자연의이해” 영역 또는 “자연과 기술의 이해” 영역에서 3학점 이상 이수(2014학년도 입학자 제외)

<개정 2014. 12. 26.>

※ 여수캠퍼스 2005학년도 이전 입학자까지는 교양영역 제한 없음

- ⑥ 2016학년도 이후 입학자: 핵심교양 영역 중 3개영역 이수하되, 계열별 의무 이수 학점은 아래의 내용을 따름 <신설 2016. 10. 27.>

- 인문사회계열: 핵심교양 ‘자연과기술의이해’, 일반교양 ‘공학전문교양’, ‘자연과학’, ‘기술·공학’ 영역 내에서 최소 9학점 이상을 취득하되, 핵심교양 ‘자연과기술의이해’ 영역은 반드시 포함
- 예체능계열: 핵심교양 ‘자연과 기술의 이해’ 영역에서 최소 3학점 이상 이수

- 이공계열: 핵심교양 ‘문학과예술’, ‘역사와철학’, ‘사회의이해’, 일반교양 ‘문화예술’, ‘사회과학’, ‘인문학’, ‘민주주의·인권’ 영역에서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⑦ 2017~2018학년도 입학자: 2016년 이후 입학자의 이수기준을 충족하되, 인문학 관련 교양과목을 8학점 이상 이수<신설 2016. 10. 27.>

- ※ 인문학 관련 교양: 핵심교양 ‘문학과예술’, ‘역사와 철학’, 기초교양, ‘기초도구(글커잉, 생활영어1·2제외)’, 일반교양 ‘문화예술’, ‘인문학’

⑧ 2019학년도 이후 입학자

- 역량교양(3개영역) 영역당 3학점 의무 이수
- 균형교양 ‘표현과 소통’ 에서 3학점 이상, ‘진로와 창업’ 에서 2학점 이상 이수
- 인문학 관련 교양과목 8학점이상 이수
- ※ 인문학 관련 교양과목인정 영역: 역량교양 ‘창의’, ‘감성’, ‘공동체’, 균형교양 ‘인간과 사회’, ‘표현과 소통’
- 계열별 의무 이수 학점
- ※ 인문사회계열 및 예체능계열: 균형교양 ‘자연과 기술’ 영역 3학점 이상 이수
- ※ 이공계열: 균형교양 ‘인간과 사회’ 영역과 기초교양 ‘기초과학’ 영역에서 각3학점 이상 이수

⑨ 2023학년도 이후 입학자: 2019년 이후 입학자의 이수기준을 충족하되, 기초교양 ‘기초SW’ 영역에서 3학점 이상 이수 <신설 2024. 7. 15.>

사) 성적표상의 교과구분과 교육과정상의 교과구분이 같은지 여부

- 교과구분이 잘못되어 졸업소요학점 부족으로 졸업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해당자들에 대하여는 첨부 서식에 의거 교과구분 정정 요청

2) 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

가) 복수전공 및 부전공의 필수교과목과 소요학점의 취득여부

나) 복수전공 및 부전공에서 이수할 교과목이 주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중복되는지 여부

- 주전공에서 이수한 교과목이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에서 이수할 교과목과 중복될 경우는 복수전공은 9학점까지, 부전공은 6학점까지 중복 인정되며, 사범대학의 학과를 복수전공할 경우 중복된 교직과목성격의 전공과목은 복수전공학과의 전공학점으로 모두 중복 인정

다) 복수전공 및 부전공 미 이수시 졸업 여부

- 주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 했어도 복수전공 졸업학점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주전공 졸업 불가. 다만, 졸업사정 기간 중에 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를 취소할 경우에는 주전공 졸업 가능

- ※ 부복수전공 이수 여부는 이수 학부(과)에서 사정함

3) 교직 이수

가) 주전공의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했어도 교원자격증 발급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부족한 학점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졸업 불가. 다만, 교직이수를 포기한 경우 졸업 가능

4) 학·석사학위연계과정 및 학·석박사학위통합연계과정자의 졸업 세부기준 <신설 2014. 8. 12.> <개정 2024. 7. 15.>

가) 졸업소요학점 및 교과목 이수 : 소속 학부(과, 전공)별 학점구성표에 정한 학점에서 일반선택 6학점을 감하여 교양, 전공, 일반선택 등의 교과구분별 학점 취득

나) 졸업논문 또는 졸업시험 : 소속 학부(과, 전공)의 선택에 따라 면제 가능

다) 대학원교과목 이수 : 6학점 이수

라) 학·석사학위연계과정 및 학·석박사학위통합연계과정 중도 포기자는 소속 학부(과, 전공)의 당초 졸업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때 이수한 대학원교과목 학점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 <개정 2024. 7. 15.>

마) 학·석사학위연계과정 및 학·석박사학위통합연계과정자가 이수한 대학원 교과목 학점은 학부의 졸업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대학원 진학 후 대학원 학점으로 인정 <개정 2024. 7. 15.>

다. 교과구분별 소요학점의 초과학점 인정범위

해당 학생에게 적용되는 교육과정 교과구분별(교필, 교선, 교양, 전필, 전선, 전공) 소요학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교과구분은 변경하지 않는다.

- 1) 교양초과학점: 교양최대인정학점 범위내에서 교양학점(교필+교선+교양)을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
- 2) 전공초과학점: 전공학점(전필+전선+전공+전공심화)을 초과하여 취득한 학점은 제한없이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
- 3) 부·복수인정학점: 부·복수(연계)전공에서 취득한 총학점은 일반선택학점으로 인정

3. 수료 사정

졸업에 필요한 학기를 이수하고 학점 및 성적평점은 충족하였으나 졸업자격인정기준에 불합격한 경우는 수료자로 확정

IV. 졸업(수료)자 확정(본 사정결과 보고 시)

학칙 제12조 및 교학규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소속 대학 교수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확정하여 총장에게 보고 함 <개정 2013. 3. 6.>

V. 졸업·수료 유보

8학기 이상 이수한 졸업대상자(다만, 건축·도시설계전공, 건축디자인학과는 10학기)는 다음과 같이 재학연한 범위 내에서 졸업 또는 수료유보 가능. 단, 수료유보자는 졸업유보를 할 수 없으며 수료유보는 2009년 2월 수료자(2009. 2월 최초 수료자)부터 적용함 <개정 2014. 8. 12.>

1. 졸업학점 이수 및 졸업자격인정기준에 합격한 자는 졸업유보 가능(다만, 학·석사학위연계과정 및 학·석박사학위통합연계과정의 경우 졸업(수료)유보 불가)<개정 2014. 8. 12.> <개정 2024. 7. 15.>
2. 졸업학점을 이수하고 졸업자격인정기준(전공, 외국어, 컴퓨터영역)중 어느 하나의 영역이라도 인정받지 못한 자는 수료유보 가능
3. 졸업·수료 유보를 희망하는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학부(과)에 신청<개정2013. 3. 6.>
4. 졸업·수료 유보는 총4회(최대 2년)까지 허용하고 그 기간 동안 휴학 등 학적변동을 할 수 없으며, 수강 제한 학점 범위 내에서 수강신청 가능함. 다만 수강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총 평점에 합산됨.<개정 2013. 3. 6.> <개정 2013. 7. 19.>
5. 졸업·수료 유보자는 유보비(수업료의 5%에 해당하는 금액)를 납부해야 하며, 수강학점에 따른 납입금은 교학규정 제14조 제5항에서 정한 수업연한 초과자의 납입금 징수 규정을 적용하여 납입함. <개정 2017. 4. 25.> <개정 2024. 7. 15.>
6. 졸업유보의 허가를 받고 유보비(수업료의 5%)를 납부한 이후에는 졸업유보를 취소할 수 없음. 다만, 사망, 질병, 취업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학생의 신청에 따라 학부(과)장을 경유하여 학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졸업유보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졸업 예정시기의 졸업자로 처리하되, 처리기한은 3월말, 9월말까지로 함<신설 2017. 4. 25.> <개정 2024. 7. 15.>
7. 6항에 따른 졸업유보 취소 시, 5항에서 정한 납입금의 환불은 「전남대학교 학칙」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함 <신설 2017. 4. 25.>

VI. 졸업 예비사정 업무 유의 사항

1. 예비사정 결과 탈락예상자 관리
가. 예비사정 결과 탈락예상자인 경우 당해학기 및 계절학기 성적에 따라 졸업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졸업예정자로 관리

2. 평점 1.75미달자에 대하여는 당해학기 및 계절학기 성적취득 결과에 따라 졸업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본 사정까지 사정대상자로 관리

부칙(2013. 3. 6.)

이 지침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7. 19.)

이 지침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8. 12.)

이 지침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2. 26.)

이 지침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7. 30.)

이 지침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0. 27.)

이 지침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4. 25.)

이 지침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4. 25.)

이 지침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10. 30.)

1. 이 지침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과 동시에 ‘학적변동자의 교과과정 및 졸업학점 적용 세부지침’은 폐지한다.

부칙(2024. 7. 15.)

이 지침은 개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조 기 졸 업 희 망 원

소속대학		소속학부(과)	
학 번		이수학기	
성 명		취득학점	
연락전화		평균평점	

위 본인은 학칙 제59조 및 교학규정 제56조에 의거 20 학년도 (전·후)기
조기졸업 희망원을 제출 합니다.

20 . . .

제출자: (인)

OO대학장 귀하

[별표2]

학·석사학위연계과정 및 학·석박사학위통합연계과정
학부졸업신청서

소속	대학	학부(과)	전공
성명		학번	

(학·석사학위연계과정생, 학·석박사학위통합연계과정생)으로 아래와 같이 졸업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취득성적

기 취득학점		총평점 평 균	금 학기 신청학점		총 학점	
학 부	학점	/4.5	학 부	학점	학 부	학점
대학원	학점		대학원	학점	대학원	학점
계			계		계	

2. 졸업 예정일 : 20 년 월 일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첨부 : 성적증명서 1부

OO대학장 귀하